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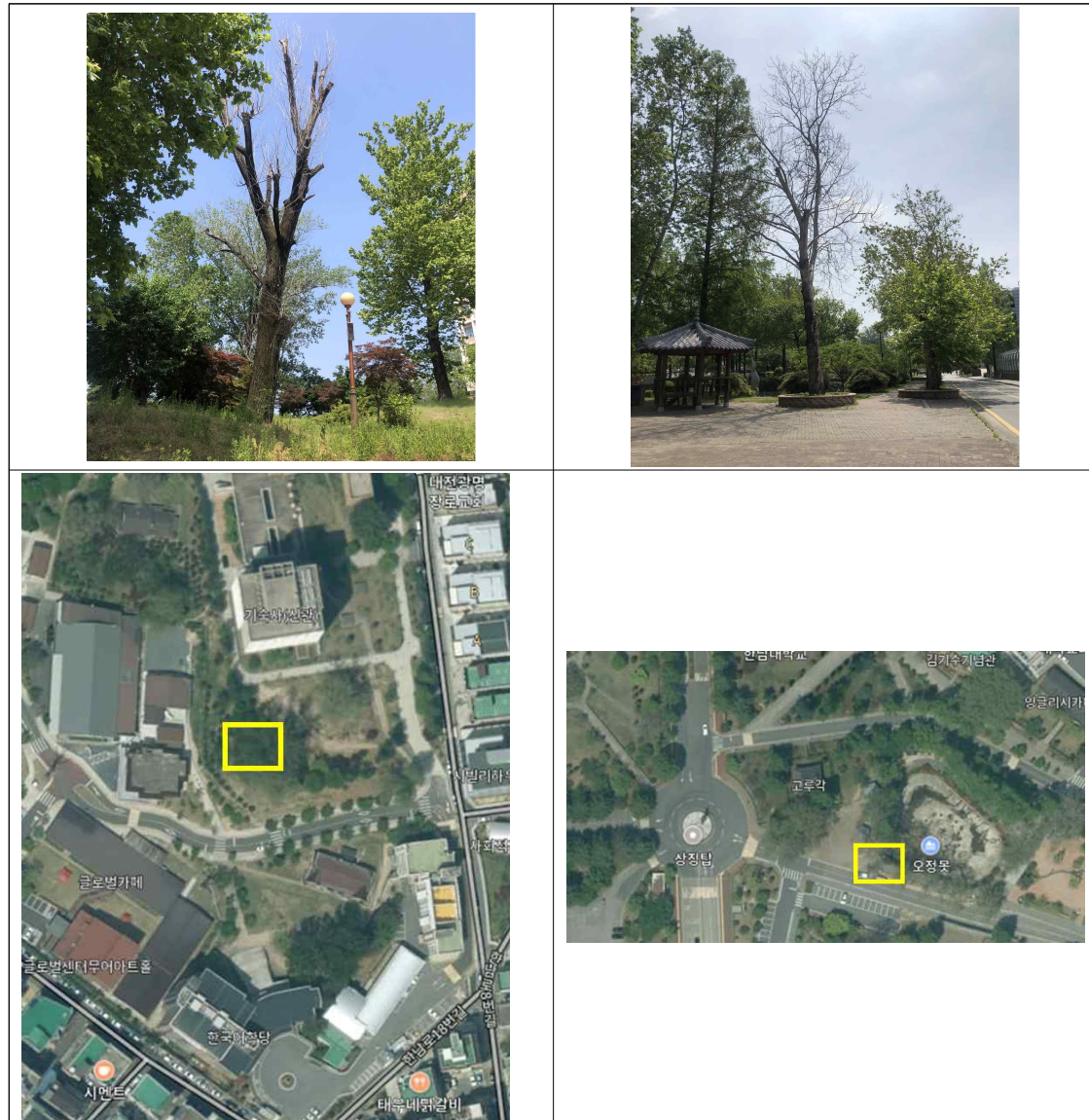
한남대학교 대형 사목 제거 과업지시서

1. 계약자(업체) 자격 :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조경 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

2. 사목 제거 대상 및 사업 내용

- 소망관 앞 1주, 오정못 앞 1주



- 오정못 앞 사목은 제거 후 원으로 된 화단 까지 처리하며, 화단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 등과 임목폐기물 모두 처분해야함
- 사목 제거는 위험함으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진행해야함
- 오정못 앞 사목은 화단 처분시 추후 보도블럭을 설치할 예정으로 안으로 조금 더 파서

진행해야함

- 뿌리가 멀리 뻗어나간 경우 적정선에서 정리하며, 주변 보도블럭에 하자 없이 정리해야함

3. 필수사항

- 가. 본 공사는 지방서와 설계도서 및 국가건설기준 “표준지방서 KCS 34 99 05, KCS 34 99 10” 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동 지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 나. 본 지방서의 규정에 없거나,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다. 본 지방서 상 수급인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 라.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관련하여 공정계획 등 착공계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후 공사에 임한다.
- 마.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감독관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 바.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여건상 당연히 시행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사. 수급인은 감독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 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 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자. 수급인은 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감독관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일체 부담하여야 한다.
- 차.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카.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 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타. 수급인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고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파. 수급인은 본 공사의 준공 완료 시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지며,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 수급인은 작업장 인근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경고 표시, 신호수 등을 운용하여 인근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시방서

가. 일반사항

- 본 조경 유지관리 작업은 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부득이하게 감독자가 구두로 지시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시방서로 본다.

나. 작업수칙

- 1) 본 공사의 전지 전정 작업은 수목의 생장과 미관을 고려하여 수행의 조정 작업을 실시하고 도장지 등의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되, 비전문가에 의한 무계획적인 전지 전정 작업을 절대 금한다.
- 2) 전지 전정 작업은 사다리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한다.
- 3) 작업 중에는 보행하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다리와 장비 등을 사용할 시에는 보행자와 작업 인부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 작업 중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4) 본 전지 전정 작업 기간 내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서는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 5) 전지 전정 작업으로 발생하는 나뭇가지 등의 폐기물은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불가 시 최단시일 내 우선 처리)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6) 전지 전정의 방법 등은 다음의 작업 방법에 의하며, 작업 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7) 작업 시 조치사항
 - 가) 작업 일정, 작업 방법, 통행 제한 등 작업계획을 사전에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나) 작업안내판을 설치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자의 불편 제거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다) 작업장비(톱, 낫, 고소작업차 등)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및 작업인부(작업착수 전, 중, 수시)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라) 낙하물(작업부산물, 작업도구 등)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와 작업 인부 추락사고(수목, 사다리 등에서 추락 등)를 방지하여야 한다.
 - 미) 작업 시 일기가 불순할 때에는 공사하여서는 안 된다.

5. 특별시방서

가. 일반사항

- 본 시방서는 한남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대형사목 제거작업에 적용한다.

나. 작업수칙

- 1) 작업 전 충분한 협의를 한 후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후 작업한다.
- 2) 작업 전 공사 안내 표지판을 알아보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 3) 작업을 위해 각종 장비 이동 시 안전을 확보한 후 이동한다.
- 4) 작업 시 주변(학교시설물 및 민가 등)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한다.
- 5) 전정 공사 시 발생하는 임목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포함해서 적법하게 처리한다.
- 6) 작업 후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한다.
- 7) 작업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기성)시 제출하여야 한다.
- 8) 기성금 및 준공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